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대한민국 조달청간 양해각서

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대한민국 조달청(이하 "양 당사자")은 본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함에 있어,

공공조달규정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의지를 표명하고,

양 당사자간 관계의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추구하며,

호혜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

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공공조달 분야의 경쟁 활성화와 투명성 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하여

아래 사항에 합의한다.

1. 양 당사자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과 대한민국 내의 공공조달(전자조달 포함) 행정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교류 협력한다.

2. 양 당사자는 국제조약,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법을 구성하는 법률,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아래 활동을 통해 본 양해각서를 이행한다 :

각자의 행정 분야 우수 사례 정보 교류를 비롯하여, 공공조달 규정 및 공공조달시장의 기능에 대한 양 당사자간 정보 및 경험 교류;

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과 고도화를 위한 양 당사자의 법률규정 및 기술 자문 상호 제공;

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및 공동 연구의 수행;

방문, 세미나, 컨퍼런스 개최;

양 당사자가 실시하는 전시회, 전문역량개발 프로그램과 훈련 등을 비롯한 교육과정 및 인턴십, 기타 공공조달 관련 행사 상호 참여;

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협력 활동

3.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, 이러한 개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

4. 본 양해각서의 이행과 적용에 관한 사안은 양 당사자간 협의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.

5. 본 양해각서는 국제협정이 아니며, 국제법상의 여하한 권리나 의무를 생성하지 않고, 양 당사자에게 어떠한 재정적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.

6.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당일 효력을 발생한다.

7.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를 통해 본 양해각서를 해지할 수 있다. 타방 당사자가 이 서면 통보를 수령한 날짜에 본 각서는 효력을 상실한다.

본 양해각서는 아스타나 에서 2015년 10월 22일 에 영어, 러시아어, 한국어로 2부씩 서명되었다.

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.

유라시아경제위원회

대한민국 조달청